

論 文

關稅法과 刑罰體系的 構造

李 敬 鎬*

The Systematic Structure of the Customs Act and Criminal Sanctions

*Kyung-Ho Lee**

〈 目 次 〉

Abstract	IV. 關稅刑法과 刑法總論의 體系
I. 關稅法の 構造	V. 特別法과 關稅刑法
II. 關稅犯의 現況과 特性	VI. 關稅刑罰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III. 關稅犯과 關稅刑法의 構造	

Abstract

The Customs Act provides for a general rule all goods entering Korea shall be subject to customs duties as set in the customs tariff schedules as other fees and taxes determined except those excluded by virtue of the Customs Act or intentional agreements. Importation begins from the time carrying vessel or aircraft enters Korea territorial jurisdiction with the intention to unload the same until the time the goods are released or withdrawn from the customhouse upon payment of the appropriate duties. Imported articles may be categorized into prohibited importations, dutiable importations and conditionally free importation. Some other articles are qualifiedly prohibited, meaning they can enter the country after compliance with certain conditions. If there is any conduct violating these act, criminal sanctions may be imposed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smuggling and other frauds, and the enforcement of tariff and customs act. As a result importers who intentionally violates Korea Customs Act may b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Many major provisions of customs act have

* 韓國海洋大學校 國際大學 法學部 教授

imposed severe sanctions for customs crimes in comparison with other crimes due to general rule of criminal law. There is a great deal of activity in Pusan area relating to smuggling of narcotics and prohibited drugs, obscene articles and weapons. On one side, criminals who seek to profit by narcotics or drug threaten public health and human environment, On other side, weapon smuggling is a significant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However the studies on customs crime and customs act have not been viewed. Thus this Article overviews especially the customs crime and criminal sanction focused on domestic customs act.

I. 關稅法的 構造

1. 關稅法的 刑事法的 性格

관세법¹⁾은 제1조(목적)에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관세징수법(조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수출입물품 통관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세법은 관세징수와 통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처벌법규를 규정하여 형사법적 성격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관세법은 재정법이며 행정법이기 때문에 확일성과 강제성을 가진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요컨대 관세법은 조세법과 통관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수행을 위하여 방대한 관세범죄와 형벌 및 조사와 처벌에 관한 형사법적 성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關稅刑法이라고도 한다. 關稅刑法은 관세징수와 통관질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내국세분야의 처벌법규인 조세법처벌법이나 일반 형사법규인 형법·형사소송법과는 별도의 처벌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세법은 형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關稅法的 體系

관세법은 관세행정의 기본법이다. 關稅(Customs

Duties)는 국세 중의 하나이지만 국세에 관한 기본법인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은 관세행정에 있어서 관세법에서 특별히 준용하는 경우(심판청구 및 체납처분의 예) 이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세법은 관세행정, 즉 관세징수와 통관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법은 전문이 11개장 309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관세의 부과·징수(제2장)와 통관(제6장)의 규정을 핵심으로 하여 징수의 확보와 통관의 적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제관세협력(제2장의 2), 운수기관(제3장), 보세구역(제4장), 운송(제5장), 세관공무원의 직권(제7장), 벌칙(제8장), 조사와 처분(제9장)의 규정을 두고 있고 總則(제1장)과 補則(제10장)을 함께 두고 있다. 또 관세법에는 별표인 관세율표가 있다.

관세법을 보완하는 법규로는 관세형벌의 기본법인 형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관세사법,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체납정리 및 심판청구의 경우), 민법과 CCC의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관세법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한 법규로는 관세 등 환급특례법, SOFA와 그에 따른 임시특례법, 외자도입법(면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감면에 대한 특례), 관세의 감면 관계 조약·협약 등과 관세율에 대한 특례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還給에 갈음하는 인하세율(대통령령), GATT양허세율(Kennedy Round 양허세율포 포함), GATT 개발도상국간의 양허세율, ESCAP 협정양허세율 등을 들 수 있다²⁾.

1) 法律 第5681號, 一部改正 1999. 1. 21.

2) 張炳燾, 關稅法-關稅의 理論과 實務-貿易經營社, 1999, 99~100쪽

3. 國際關稅法の 現況

(1) GATT의 沿革

1930년대의 불황기에는 많은 나라가 고율 관세, 수출입제한, 외환관리 등 보호주의적 무역장벽을 높이 쌓아 세계무역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사태에 조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무역장벽은 항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타났다. 그리하여 1944년 미국의 Bretton Woods에서 연합국의 주요국들이 모여 전후 세계 경제의 재건복구 등을 논의하는 가운데 전후 세계 경제의 번영은 자유로운 통상의 확대에 있다는 기본이념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Bretton Woods회의의를 모체로 하여 금융면에서의 국제협력으로 IMF(국제통화기금)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1945년에 발족하였다.

그러나 무역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은 그리 순조로운 진전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종전 직후 1945년 11월에 미국은 「세계무역 및 고용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여 모든 무역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각국의 고용과 소비를 확대하고 인류의 복지와 번영을 달성하자는 원대한 이상을 가진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대하여 대다수 각국은 이를 찬성하여 각국간에 여러 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어 1948년에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헌장 또는 ITO헌장)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아바나헌장은 지나치게 자유통상이념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처음 52개국의 서명은 얻었으나 제안국인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가국이 의회에서 비준을 얻지 못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이 ITO헌장을 제안할 때 각국과 더불어 관세인하고교섭을 벌일 것을 아울러 제안하였다. 1947년에 주요국들이 모여 대규모의 관세인하고교섭을 하고 이 교섭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하나의 국제협정이 마련되었다. 이것이 곧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이다. 이와 같이 성립된 GATT는 원래 ITO가 실현될 때까지의 잠정적 협정으로 출

발하였다. 그러나 ITO가 좌절됨에 따라 GATT가 ITO본래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어 1948년 이후 세계적 규모의 무역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정으로 되었다. 그 후 1993년 말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 1995년부터 기존의 GATT체제가 WTO체제로 바뀌게 되어 오늘날에는 WTO가 가장 큰 기본적인 국제관세협정기구이기도 하다.

(2) 우리 나라의 GATT 가입

1950년에 우리 나라는 GATT 가입을 시도한 바 있으나 6·25동란으로 좌절되고 6·25이후에는 우리 나라의 경제체제가 혼란기에 있어 가입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GATT에 저개발국이 다수 참가하여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수출증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GATT의 임무의 중점이 바뀌어지자 우리 나라도 가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1963년 GATT 사무총장의 가입권유를 받고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어 1966년에는 교섭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였다.

우리 나라는 GATT 가입을 위하여 45개 품목으로 된 관세양허표를 제시하여 수많은 교섭회의에서 품목조정을 거쳐 총 60품목에 대한 양허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GATT사무국에 제출하였다. 동사무국에서는 우리 나라 가입에 관한 의정서를 작성, 쉰 체약국에 배부하여 가입여부의 투표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게 되었고, 가입의정서에 우리 나라가 서명함으로써 1967년 4월 14일자로 가입이 되었다.

우리 나라의 GATT가입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모든 가입국과 일괄 무역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수출상품이 세계시장에서 각종 규제나 차별대우가 없게 되었고 해외시장 확대와 수출증대에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둘째, 저개발국에 대한 각종 특혜장치의 혜택을 받아 선진국과의 대결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수출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셋째, 우리 나라가 양허한 품목의 국내산업에 대하여는 그만큼 자극을 주어 기술혁신이나 경영합

리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함으로써 품질 개선, 가격인하 등이 실현되어 국내소비자도 보호하게 되었다.

(3) GATT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

GATT체제하에서는 케네디라운드와 같은 대규모 무역협상이 타결되기도 하였지만 개발도상국의 무역 확대를 위한 조치는 미진한 상태였다.

남북문제를 배경으로 하여 1964년에 설립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저개발국이 주동이 되어서 선진국에 대하여 협상을 벌여 1970년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를 창설하였다. 이와 같은 UNCTAD의 개도국을 위한 특혜관세와는 별도로 GATT체제하에서 개도국의 무역확대 방안이 독자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1967년 9월 20일 화이트 GATT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 상호간의 자조 노력으로서 개도국만이 참석하여 상호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인하하고자 하는 소위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라 GATT는 기본원칙(Ground rule)을 작성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무역위원회(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of Developing Countries)를 설치하였으며 GATT 가입에 개도국뿐만 아니라 비가입 개도국에게도 동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1967년 제27차 GATT총회에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던 GATT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은 1970년부터 본격적인 품목별 관세인하협상에 들어가서 1971년 8월 20일 사실상 협상종결을 보았다. 그 결과 16개국간에 협상이 타결되어 총 322개 품목(CCN 4단위)의 개세를 양허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1971년 11월 26일 제27차 GATT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1973년 2월 1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이 협상에 참여하여 현재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유고, 터키,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 스페인, 이집트, 튀니지

아, 멕시코, 그리스, 칠레, 우루과이, 페루, 방글라데시 등 16개국이며 다른 개도국들도 본 협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협상에 우리 나라가 양허한 대상품목은 연초, 시멘트류, 페니실린과 스트랩토 마이신(소매용), 펄렛센스, 의자(필리핀 마호가니, 라왕 또는 탕길 및 등나무제의 것), 별게 이외의 가구(필리핀 마호가니, 라왕 또는 탕길 및 등나무제의 것) 등 6개 품목이다.

(4) 우루과이라운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신보호주의동향이 나타나고, 종래 세계경제를 지탱해왔던 미국이 일본이나 선발개도국에게 시장을 빼앗기는 등 세계경제 구조에 변화가 일어났다. 선진국들이 서비스부문의 무역자유화를 주장하기에 이르자 GATT에서도 90년대 이후와 21세기에 있어서의 새로운 세계무역 규범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1986년 9월 우루과이 폰타 델 에스테의 각료회의에서 GATT의 8번째 다자간 협상을 벌였다.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의 시작이라 하겠다.

그 후 1990년 7월 미국 휴스턴에서 서방 7개국 정상회담(G7)에서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을 다짐한 바 있었다. 이어 1990년 12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가 열렸고, 120명의 세계 각국 각료들이 모여 90년 말 완전타결을 목표로 많은 논란을 벌였으나 각국간의 이해가 엇갈려 타결을 보지 못하고 91년 이후로 미루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내용은 각국의 수입개방 및 관세율인하를 종래보다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서, 특히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의 분야에서 각국이 과감히 개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UR와 WTO

1986년이래 타결을 위해 미국·EC 등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온갖 노력을 기울여온 끝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마침내 7년만인 1993년 12월 15

일 11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완전타결 되기에 이르렀다.

1995년 7월부터 발효되는 UR합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1995년 1월까지 GATT를 대체할 새 무역기구인 WTO설립
- ② 1995년 이후 공산품은 5년, 농산물은 6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
- ③ 원칙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모든 수입제한조치를 일반관세로 전환하되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하여 일정유예기간 동안 일정량의 최소시장 접근 허용
- ④ 수출자율규제 등 경과조치를 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철폐
- ⑤ 컴퓨터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등 보호
- ⑥ 수입을 양적 또는 금액상으로 제한하는 무역관련 규제를 금지
- ⑦ 원칙적으로 서비스에는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 적용

UR의 타결로 미국·EC·일본 등 선진국들은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되어 큰 이득을 보게 되었고, 기술수준이 낮은 개도국 쪽은 오히려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쇠고기 등 농산물의 수입에 따른 농민의 타격이 클 것을 감안, 쌀에 대한 예외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쌀 국내소비량의 1% 내지 4%까지만을 수입토록 하고, 그 후에는 완전히 수입을 자유화하도록 하는 조건하에 모든 농산물도 개방하게 되었다.

UR의 타결에 따라 GATT의 뒤를 잇는 다자간 무역협상기구로서 世界貿易機構(World Trade Organization ; WTO)가 창설되었다. WTO는 제네바에 본부를 두면서 GATT사무국의 각종 기능과 조직을 흡수하여 2년에 한 번씩의 각료 회의를 열도록 하고 그 하부조직으로서 무역수지위원회·무역개발위원회·운영위원회·농업위원회·무역환경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³⁾.

II. 關稅犯의 現況와 特性

1. 海洋과 關稅犯

우리 나라 해상수송은 수출입 화물 운송량의 99.7%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화물 운송을 통해서도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98년도의 경우 해상운임수입이 1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특수여건으로 인하여 육로에 의한 교역은 생각하기 어렵고 선박과 항공기를 통하여 모든 수출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위치는 대륙(중국·러시아)의 입·출구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통상 무역 및 국제운송의 중심 축이고 최상의 해양무역 국가로서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21세기에 대비하여 우리 나라가 해상운송(남·북한 통일체계)과 육상운송(중국대륙·러시아철도)을 복합적으로 연결하는 지정학적 특성까지를 살리는 경우, 우리 나라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수출입 전진기지이고, 무역 통상국가로서 해상수출입은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항공수송을 통한 수출입행위는 운송비용 문제로 인하여 귀중품이나 고가품에 해당하는 일부 품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대부분의 수출입행위는 선박을 이용한 해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 關稅犯은 해양무역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자에 관세법의 동향을 보면 무역이라는 합법을 위장한 무역편승밀수사범, 부정수출입사범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관세법의 대부분은 우리 나라의 주요 항구, 즉 해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선원 및 선박을 이용한 해상밀수가 전통적으로 關稅犯罪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관세법과 해양범죄는 분리할

3) 海洋犯罪白書, 釜山地方檢察廳, 1997, 73~77쪽.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특히 일본의 대마도를 거점으로 하는 우리 나라 남해안 일대의 항구들은 관세법 및 기타 해양사범과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해양범죄는 관세법이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범죄들을 예방, 단속함에는 검찰의 지휘아래 세관, 해양경찰서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소속 사법경찰관리들의 조직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⁴⁾.

2. 근자의 關稅犯 現況⁵⁾

수입자유화의 확대 및 국산품의 품질향상으로 1988년경부터 인구의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상태이나 밀수수법은 더욱 지능화·다양화되었고, 정상적인 무역을 위장한 합법조장밀수가 성행하고, 참깨 등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對 중국 해상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따라 무역의 자유화와 관세행정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악용한 합법조장 밀수와 마약류의 밀수가 계속되고 있다.

(1) 關稅犯의 現況

우리 나라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국제경제 환경에 부응하여 정부는 수입자유화, 여행자유화, 외환자유화 정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관세범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이후 적발건수에 있어서는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범죄물품의 가액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1건당 평균 범죄물품 가액이 1993년에는 3,544만원 상당이었으나, 1996년 11월 현재는 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관세법이 점차 대형화 되어가고 합법조장밀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범죄유형별 현황

우리 나라 관세법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관세포탈범과 관세장물범이다. <표 2>에서 보면 전국의 경우 關稅連脫犯이 관세범 중 차지하는 적발건수의 비율은 1992년 38.1%, 1993년 24.1%, 1994년 36.96%, 1995년 41.2%, 1996년(11월 현재) 45.7%로써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關稅贓物犯이 관세범중 차지하는 적발 비율은 1992년 54.6%, 1993년 71.3%, 1994년 56.6%, 1995년 52.7%, 1996년(11월 현재) 46.2%를 나타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와같이 관세장물범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관세장물범이 점차 지능화되고 수입자유화폭이 확대되

<표 1> 전국 관세범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 세관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부 산 세 관	558	501	594	382	538	460	498	832	278	785
서 울 세 관	1,027	412	1,893	598	871	467	732	971	545	873
기 타 세 관	916	1,411	1,308	365	1,115	441	979	417	713	800
합 계	2,501	2,324	3,795	1,345	2,524	1,368	2,209	2,220	1,536	2,458

4) 海洋犯罪白書, 451쪽.

5) 海洋犯罪白書, 470~474쪽.

<표 2>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건, 억원)

범죄유형별	연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관세포탈죄 (개정전 법 제 180조)	부산	256	394	226	290	231	370	221	283	177	422
	서울	215	63	82	78	151	330	151	688	136	762
	기타	484	164	608	297	551	250	538	282	389	297
	계	955	621	916	665	933	950	910	1,253	702	1,481
관세장물죄 (개정전 법 제 186조)	부산	257	14	333	5	255	7	217	4	54	2
	서울	764	33	1784	16	694	10	556	43	385	18
	기타	347	4	590	3	480	4	392	7	271	18
	계	1,368	51	2,707	24	1,429	21	1,165	54	710	38

어 관세장물의 추적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부산지역 관세법 현황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세관에 적발된 관세법도 적발건수에 있어서는 1993년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범죄물품 가액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세관에서 적발된 관세법의 1건당 평균 범죄물품 가액은 1993년에는 6,428만원 상당이었으나, 1996(11월 현재)에는 2억 8천 2백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관세법 동향과 같이 관세법이 점차 대형화되어 합법가장밀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산지역은 전국 제1의 항구가 소재하고 있고 선박을 이용한 밀수와 합법을 가장한 무역밀수가 다수 적발되어 1건당 평균 범죄물품가액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지역의 경우 관세포탈법이 관세법 중 차지하는 적발건수의 비율은 1992년 45.8%, 1993년 38.0%, 1994년 42.9%, 1995년

44.4%, 1996년(11월 현재) 63.7%로 나타나 전국과 같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관세장물법이 관세법 중 차지하는 적발건수의 비율은 1992년 46.1%, 1993년 56.1%, 1994년 47.4%, 1995년 43.6%, 1996년 (11월 현재) 19.4%로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전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정수출입법과 관련하여 부산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67.3%, 1995년 72.6%, 1996년 (11월 현재) 60%를 차지하여 무역에 편승한 합법가장밀수의 상당부분이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세법 전체에서 부산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6년 11월 말 현재기준 건수에서 18%, 금액에서 32%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지품수출입법, 관세포탈법, 무신고수출입사법, 부정수출입사법과 관련하여는 부산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건수 28%, 금액 27%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부산세관 품목별 적발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목에 따른 일정방향의 관세법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나 금괴나 보석의 경우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관세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표 3> 부산세관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건,억원) -()란은 해당범의 차지 비율

구분 \ 연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포탈죄	256 (45.8)	394 (78.6)	226 (38.0)	290 (76)	231 (42.9)	370 (81)	221 (44.4)	283 (34)	177 (63.7)	422 (54)
무신고수출입죄	42 (7.5)	92 (18.4)	34 (5.7)	82 (22)	15 (2.8)	33 (7)	4 (0.8)	5 (0.8)	8 (2.9)	9 (1)
관세장물범	257 (46.1)	14 (2.8)	333 (56.1)	5 (1)	255 (47.4)	7 (1)	217 (43.6)	4 (0.5)	54 (19.4)	2 (0.2)
금지품수출입죄										
부정수출입죄					35 (6.5)	41 (9)	53 (10.6)	520 (62.3)	33 (11.8)	157 (20)
기타	3 (0.6)	1 (0.2)	1 (0.2)	5 (1)	2 (0.4)	9 (2)	3 (0.6)	20 (2.4)	6 (2.2)	195 (24.8)
합계	558 (100)	501 (100)	594 (100)	382 (100)	538 (100)	460 (100)	498 (100)	832 (100)	278 (100)	785 (100)

<표 4> 부산세관 품목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금피,보석	농,축,수산물	한약재	기계,전자품	주류,식품	기타	합계
1992년	96	61	14	23	24	283	501
1993년	59	76	37	52	2	156	382
1994년	44	273	3	41	16	83	460
1995년	47	66	18	68	6	627	832
1996년	77	191	10	38	37	432	785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역자유화에 편승하여 금피나 보석류의 밀수입 요인이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물동량의 대형화, 해외여행자유화에 따라 그 발견이 쉽지 아니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국내와 국제가격의 큰 차이에 기인하여 밀수출입 등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3. 關稅犯의 特性

(1) 最近 關稅犯의 特性⁶⁾

가. 수입제한품목의 위장·은닉 반입

수입업자들이 물품을 합법적으로 수입하면서 식

6) 이하 해양범죄백서, 466~468쪽.

별이 곤란한 수입제한품목을 위장 반입하거나 은닉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 즉, 수입제한 중고품(선박, 기계류)을 수입조건에 위반하여 위장수입하기도 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산물품 반입시 비관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 관련서류(원산지증명서, 항해일지 등)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중국산 농수산물물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하는 등 무역을 이용한 밀수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추가루, 마늘, 생강 등을 혼합 반입하여 수입이 보다 손쉬운 '기타 품목'으로 분류하여 위장수입하는 것과 같이 수입제한품목에 첨가물을 섞거나, 품명 규격을 허위 신고하여 수입자유품으로 가장하여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수입선 다변화정책에 따라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제품 등을 밀수입하면서 일본제품을 미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우회시켜 원산지를 위장하여 우회수입 하거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해체하여 여러 세관을 통해 위장하여 분해수입 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입가격의 저가신고 등 가격조작에 의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도 있다.

나. 해상밀수

선박을 이용한 밀수는 수입제한품목의 위장·은닉반입에 비하여는 감소하는 추세다. 선박을 이용한 대형금괴밀수, 참깨 및 가전제품밀수는 계속되고 있다.

종전부터 성행하여 온 대일 화물선 밀수 외에 국내외 농수산물의 가격차이가 크게 남에 따라 동지나해 또는 서해상에서 중국 대만선박 등과 접선하거나 또는 그곳에 기항하여 농산물을 밀반입하는 형태가 있다.

일부 근해 어선들은 전자제품 등을 선적하고 출어하여 공해상에서 중국어선과 접촉, 참깨, 아귀, 북어 등 농수축산물은 물론 주류, 도자기, 건버섯 등 각종 물품과 물물교환하여 밀수입하고 있다. 또한 물물교환한 수산물을 직접 어획한 것으로 위장반입하여 판매하는 등의 편법이 동원되고, 전문 밀수꾼들이 중국 현지에 행동책을 두거나 중국전문조직과

결탁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0년에 들어서 국내의 히로뽕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 및 대만산의 히로뽕 및 그 원료가 선박을 통해 밀수입되기도 한다. 중국교포들에 의한 밀수는 한약재 등의 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산삼, 아편 등 소형 고가품의 밀반입이 증가추세에 있다.

다. 항공밀수

항공편을 이용한 밀수는 세관의 단속이 지속적이어서 적발이 쉬운 물품의 반입은 감소되고 있으나, 귀금속, 금괴 등 은닉이 용이한 고가품의 반입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이아몬드의 경우, 은닉이 손쉬울 뿐만 아니라 투시기에도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밀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업형 '보따리 장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만, 일본 등을 수시로 왕래하며 직업적으로 범행하거나 전자제품, 의류, 보석류 등을 창대품으로 가장한 밀수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항공밀수의 경우 세관의 통관담당 직원들과의 유착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라. 관세장물의 유통

각종 수법으로 밀수입된 호화의류, 가전제품, 보석류 및 P.X.나 커머셔리에서 부정유출된 면세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단속으로 진열 판매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어서 물품은 창고에 보관하고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판매하거나 상가단속에 대비하여 자체경비를 강화하기도 한다. 또한 부정유출된 골프채 등에 통관 필증의 부착, 불특정 수입면장의 비치 등 정식통관품을 위장하기도 한다.

특히 1996년 7월부터 수출입면허제에서 수출입신고제로 전환되어 통관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통관절차에서 밀수품을 적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었고, 시중유통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밀수품의 유입을 차단할 수 밖에 없다.

(2) 關稅犯의 原因과 性格

가. 關稅犯의 原因

관세범죄는 그 범법행위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대량으로 때로는 소량으로, 규모와 내용을 달리하면서 국민경제의 암적 존재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요인은 결국 부정외래품의 구조적 유입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不正外來品流入原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⁷⁾.

첫째, 國內外 상품가격의 隔差에 기인한다. 부정외래품의 유입은 높은 關稅率과 特別消費稅 등으로 합법적인 수입으로는 국내의 동종생산물품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상수입의 경우 諸稅의 고율 부과로 상품가격은 비싸지고, 그만큼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내생산품보다 경쟁상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둘째, 國內外 商品의 品質隔差에 기인한다. 외래품의 부정유입은 국내기술수준의 격차에 기인한다. 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과정에서 품질향상이 현저히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일부 품목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보아 낙후된 품질을 가진 상품이 많다. 품질격차는 현재 기술수준의 격차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과의 기술개발의 격차이다.

셋째, 物量供給의 不足이 부정외래품 유입원인이 되는 수도 있다. 이때의 공급부족은 절대적인 성질의 것이라기보다 수요구조에 따른 상대적인 부족인 경우가 많다. 獨占的競爭이 신상품, 신기술, 신자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신상품개발로 인한 국내공급부족은 언제나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 포장 등의 대내외적 격차도 공급부족의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歪曲된 消費構造를 지적할 수 있다. 선진외래품에 대한 사치성 소비관습이 일부계층에 국한된 일이지는 하지만 소비구조를 왜곡시킨다.

관세범의 일반적인 성격은 재정범 또는 조세범의

일종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세범은 수출입물품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범죄이므로 범죄행위를 하는 자도 그 방면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인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이를 조사·처벌하는 기관도 關稅法 및 무역거래관계의 전문지식을 요한다. 밀수라는 위험한 방법으로 국제간에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큰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주·운반책·판매책 등과 같은 일련의 조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밀수 가운데 특히 밀수입은 주로 국산품과 외국상품과의 품질 및 가격의 차이나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를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관세범은 경제적 후진사회에서 많이 발생한다.

밀수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5대 사회악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고, 그 처벌도 대단히 엄하다. 다음과 같은 관세범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關稅犯의 性格

1) 害惡性

저개발 국가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간산업을 육성하여 생산능력을 증가하여야 하고 수출을 증대하여 외화를 획득한다. 그런데 密輸가 성행하여 密輸品이 국내시장에 범람한다면 關稅로 흡수되어야 할 財源이 그만큼 脫漏된다. 게다가 국내 산업은 밀수품에 밀려 도산될 것이며 경제발전은 도저히 가망이 없게 된다. 만일 밀수품이 시장에 범람한다면 부존자원이 모자라는 우리 나라가 오직 살길이라고는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 밖에는 없는 절박한 처지에서, 수출기반이 허물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와 같이 密輸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압과 같은 존재이므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근절해야 하는 독버섯과 같은 이기적인 국민 경제적 침해사범이다⁸⁾.

2) 刑罰流動性

關稅犯은 行政犯에 속하는 財政犯이므로 일반 刑事犯과는 달리 형벌규정이 국내외의 경제상황에 따

7) 崔日煥, 經濟的 側面에서 본 不正外來物品 問題, 關稅, 56號, 14~15쪽.

8) 黃相得, 關稅犯罪論, 韓國關稅研究所, 1983, 31~32쪽.

라 財産刑을 위주로 처벌하기도 하고, 보다 중한 自由刑으로 처벌하기도 하는 등 유동적이었다. 이는 經濟犯罪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유동성에 따른 대비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관세법은 국제성을 띠고 있으므로 더욱 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관세법의 構成要件이나 刑罰規定이 달라지고 새로운 개념⁹⁾의 관세법이 탄생하는가 하면 또 없어지기도 한다. 그것은 국내외 경제정책의 유동성에서 오는 것으로 그때 그때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형벌규정도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윤리성에 바탕한 自然犯(delitto naturale)과는 달리 관세법은 시간의 흐름 및 국내외 경제변동에 따른 경제정책방향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극히 유동적인 경제범죄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형벌규정의 흐름을 살펴보면 건국초기에는 매우 단순한 범죄규정과 경한 형벌규정으로 밀수범을 다루어 왔다. 사회적 발전과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密輸가 激增하면서 그 수단방법이 知能化 되어가고 常習化, 組織化되어갔다. 따라서 밀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弊害가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密輸의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써 벌금위주의 형벌규정을 중한 自由刑과 병과하도록 하였고, 종래의 秩序犯(無申告輸出入罪)으로 다루던 행위를 형사범죄화하는 등 법규정을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3) 營利性和 組織性

密輸는 쉽게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행하는 범죄로서 국가와 민족이야 어떻게 되던, 나라의 경제적 해악성에는 아랑곳없는 잘못된 이기심에서 행하는 것이다. 密輸를 행하려면 密輸資金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은 일반 竊盜犯과 같이 困窮을 동기로 범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경제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한 사업적 영리성을

띠고 있다¹⁰⁾.

관세법은 대부분 密輸資金을 제공하는 資金主와 密輸行爲를 실제로 행하는 行動隊員의 분업형태로 파악할 수 있고, 마치 조직범죄로서 철저히 조직화·계급화되어 있다¹¹⁾.

4) 國際性和 知能性 및 專門性

국가간의 關稅線을 초월하면서 관세를 逋脫하고 국가의 금지와 규제를 회피하여야 하는 관세법에 있어서는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이 특히 강하다. 즉 관세법이 관세를 포탈하고 국가의 금지와 규제를 회피하려면, 어떤 국가에서 輸出入을 금지·제한하고 있는 물품이 무엇인가, 內外國의 물가사정은 어떠한가, 그 물품 등에 대한 관세율은 어떠한가, 외국에서의 물품구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密輸對象物品의 국내외적인 수요탄력성은 어떠한가, 密輸行爲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직이 필요할 것인가 등 국내외에 광범위한 정보와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간의 물품이동을 규제하고 있는 關稅法規에 관하여서는 물론이고 국제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세법은 경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이 강한 범죄이다. 특히 교묘히 합법을 가장하여 法人體 등에 의하여 행해질 때에는 전형적인 지능범으로서의 경제적 전문성 및 국제성을 나타내기도 한다¹²⁾.

5) 常習性

密輸犯 중에도 海上密輸, PX-物品流出, 미육군우편사무소(Army Post Office :APO)를 이용한 密輸와 그 仲介商, 不正外來品 專門商들은 호구지책으로 하는 자도 있지만 치부의 수단으로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한번 성공하면 다른 사업보다도 이익이 많을 뿐 아니라 판매가 용이하고 稅關이나 搜查機關에 의하

9) 인터넷의 거래에 있어서 關稅를 輸出國에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輸入國에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10) 海洋犯罪白書, 456쪽.

11) 海洋犯罪白書, 456쪽.

12) 海洋犯罪白書, 455~456쪽.

여 적발이 되더라도 그 손해의 보충이 용이하여 일단 密輸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한번 密輸에 관련된 자는 쉽게 常習化된다. 따라서 根源의인 密輸者나 암거래시장의 상인들의 상습성은 關稅犯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¹³⁾.

III. 關稅犯과 關稅刑法의 構造

1. 關稅刑罰의 흐름

1949년의 關稅法 制定 당시 關稅罰則條項은 罰金刑 및 沒收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戰時로 인한 hyper-inflation(1951년도 인플레이션 530%)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戰後의 국가재건과 사회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1951년도에 관세사범에 대하여 懲役刑을 신설하고, 1957년도에는 그 처벌형량을 강화하였다.

뒤이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유수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커지게 되었다. 자본재수입의 증가로 자본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이를 국내저축으로 대체하기 위한 소비억제 정책이 시행되는 한편, 密輸를 국가적 罪惡으로 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처벌형량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1966년도에는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에 關稅法違反行爲에 대한 특례규정을 삽입하여 그 처벌을 더욱 강화해 왔다.

1980년대 이후 1996년 12월 30일의 關稅法 개정 시까지는 관세벌칙조항의 세분화를 위한 개정은 있었으나 처벌형량의 조정은 거의 없었다. 1998년, 1999년 1월에도 처벌형량의 조정 등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이나 규모가 이미 아시아에서 2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 OECD)에 가

입하는 등 국내의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선진각국은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따른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무역자유화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현행 關稅法은 21세기 지구촌 한가족시대가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통관질서의식을 포섭하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개발도상국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다¹⁴⁾.

2. 關稅犯의 構造

관세는 조세의 일종으로 선진국을 포함한 각국에서는 무역정책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누구나 물품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는 통관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이며 그 통관과정에서 관세 등 조세를 국고에 수납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關稅法은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규가 지켜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로 흡수되어야 할 재원이 그만큼 탈루된다. 게다가 국내시장은 밀수입된 외국물품의 범람으로 잠식되어 국내산업발달에 저해를 초래하게 되고 물품대금으로 외자를 유출시키며 사치풍토를 조장하여 국민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해악을 지니게 된다.

또한 저속한 외국의 도서, 간행물, 도색영화, 음반, 조형물이 밀수입될 경우 고유한 미풍양속에 악영향을 줄 염려가 있다. 또한 국가변란의 목적을 위한 安保 危害物品의 밀수 또는 첩보·국가기밀에 속하는 물품의 밀반입은 국가존립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화폐, 지폐, 은행권이나 무체재산권의 위조, 변조, 모조품의 밀수입은 우리 나라 통상구조를 왜곡시키는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입 물품이 거쳐야 할 정상적인 통관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규는 세관공무원이나 수출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13) 黃相得, 앞의 책, 36~37쪽 참조.

14) 海洋犯罪白書, 480쪽 참고(중래의 關稅法에 국한하고 있으나 지금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입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 관세법규는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통관을 하였거나, 통관절차과정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명령·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벌칙규정을 설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관세범(customs crime)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범죄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違背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處罰되는 것을 말한다¹⁵⁾.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특가법 제6조)되는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관세범에 해당된다. 특가법도 관세법을 수용하고 있고, 특가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관세범도 그 행위는 관세법의 위반이므로 처벌법규가 관세법이나 특가법이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세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행위도 관세특가범이다.

관세범은 국가재정권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관세범이 조세법으로서의 성격과 통관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상품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만든 법체계가 관세법이며 그 통제규정에 따른 제재가 형벌과 관세범죄이다. 그리고 관세범이 세수나 행정질서에 위반한 행위란 점에서 租稅犯 또는 財政犯의 일종이고 나아가서는 行政犯의 하나이다¹⁶⁾.

관세범은 행정범이고 재정범의 일종이다.

그런데 행정범(법정범)과 형사범(자연범)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인가¹⁷⁾ 그 구별의 실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관세범에 대한 형벌도 관세법상 특별한 배제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형사범과 동일하게 刑法總則이 적용된다. 그 조사와 처분의 절차도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

형사범이나 행정범이나 다같이 형벌을 과하게 되는 가벌적 행위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행위라는 점에 하나도 차이가 없으며 동일하다.

우리 나라에서의 통설은 논리와 도덕과의 관계에 구하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즉 형사범(자연범)은 그 행위가 법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체가 반도덕성·반사회성을 지닌 것이 아니고 법규가 규정한 명령·금지에 위반한 까닭에 비로소 반도덕성·반사회성을 띠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통설의 견해도 이념적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추상적 표준임에 불과하고 결정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형사범에는 논리성이 강조되는 것이고 행정범은 행정적·합목적성이 지도원리로 강조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벌을 과함에 있어서는 양자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학자들은 양자의 구별을 논하면서도 그 구별의 유동성을 인정하고 있다. 법정범이 자연범화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세범 중에서도 밀수범은 행정의 합목적성 추구에 반하는 범죄라기보다 오히려 반도덕성이나 반사회성을 띤 자연범화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관세범은 實質犯(밀수범)과 形式犯(질서범)의 2種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⁸⁾.

15) 關稅法 第199條 第1項, “關稅犯이라 함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命에 違背하는 行爲로서 이 법에 의하여 處罰되는 것을 말한다.”

16) 張炳撤, 앞의 책, 447쪽 참조.

17)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형법상에 규정된 범죄를 刑事犯이라 하고 행정법규에 규정된 범죄를 行政犯이라고 한다. 행정범과 형사범을 구별하는 경우에, 형사범은 그 행위가 법규정을 기다릴 것 없이 그 자체가 반도덕성이나 반사회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自然犯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행정범은 그 행위 자체는 반도덕성이나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규제가 정한 명령·금지에 위반한 것이고, 이를 法定犯이라고도 한다. 형사범은 윤리성이 강조되고 행정범은 행정의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범이고 행정범이고 모두 국가의 법질서 위반이고 여기에는 다같이 형벌을 가하고 있으며, 그 처벌은 양자 공히 법적안정성을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자를 구별할 실익은 적다.

18) 결과발생의 필요 여부만으로 실질범과 형식범을 엄격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實質犯에 속하는 범죄도 결과를

實質犯이란 이를 結果犯이라고도 한다. 이는 부정의래품의 유입이 현실화되어 실질적으로 法益의 侵害 또는 危害의 결과가 발생함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하고, 關稅法 제179조(밀수출입죄), 제180조(관세포탈죄 등), 제186조(밀수품의 취득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形式犯이란 범죄의 構成要件이 일정한 행위 즉, 作爲 또는 不作爲로만 성립되는 범죄로서 어떤 법익침해 또는 위험상태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한다. 關稅法 제188조(허위신고죄)가 이에 해당한다. 즉 부정의래품의 유입이 현실화되지 않고 위태화에 그친 경우이다.

관세범죄 중 실질범은 국가산업의 육성을 저해하고 또 사치풍조의 조장에 의한 소비성향을 높이는 등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싸우면서 일을 하여 자립경제를 이룩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직시할 때 密輸(smuggling)는 망국적인 범죄이다.

밀수범의 이와 같은 해악성에 비추어 행정법적 특성이 강조되고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준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일정한 범위를 초과한 대규모 밀수범죄 등에 대하여는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도록 한 특가법이 규정공시되어 실시 중에 있다(특가법 제6조). 더구나 동법 제7조에서 관계공무원이 해상에서 밀수범을 발견하였을 때에 정지명령을 받고도 도피할 경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 關稅刑法의 構造

關稅犯에 대한 형사처벌을 關稅刑罰이라고 하고, 관세법·특가법 등에 위반하여 받는 형사처벌과 그 근거가 되는 형벌규정을 통칭하여 關稅刑法이라고 한다. 관세형벌은 관세형벌의 원칙과 영역에 속한 것이고, 단순 행정제재로서의 관세벌과는 다르다. 따라서 관세형벌을 관세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¹⁹⁾. 관세형벌은 과태료, 업무정지, 출국금지 등과 같은 행정제재에 의한 관세행정처벌과는 그 처벌의 주체와 절차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關稅刑罰도 行政罰의 일종으로서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의 적정을 기하고 관세행정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종 행정법규에는 공익과 국민복지를 도모하고 국가행정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명령·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 행정제재와 병행하여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법상의 형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행정형벌이라고 하고, 이는 행정형벌의 영역에 속한다. 관세형벌도 관세행정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건전한 국가통상질서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行政刑法이다.

관세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하여 반드시 법률에 형사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그 형벌법규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최종적 형벌처분은 반드시 사법적 조치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관세행정제재는 단순한 행정적인 수단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출입국금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예:미수범, 예비범 등), 形式犯(질서법)에 속하는 범죄도 위험상태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무진에서는 關稅犯의 경우에 벌금 이외에 자유형까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비교적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실질범이라 하고, 이를 개괄적으로 밀수범죄라고도 하며, 關稅法이 규정하는 범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처벌을 벌금형만으로 하도록 규정된 비교적 가벼운 關稅犯을 질서범이라 하고 있다.

- 19) 일반적으로 행정벌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사법적 조치를 최종적인 처벌로 한 行政刑罰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단순한 행정작용에 따른 명령·금지조치나 행정자체가 최종적 처분인 행정제재나 과태료처분 등의 行政秩序罰이 있다. 전자가 關稅刑法의 영역이고, 관세벌도 다른 행정법규와 마찬가지로 단순 行政秩序罰과 行政刑罰의 두가지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다만 관세벌은 관세행정의 중요성과 그 수행목적의 특성상 국가형벌권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행정형벌의 작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등 불이익을 주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처벌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 행정작용에 의한 처벌이다. 관세형벌만으로는 밀수를 근절할 수 없다. 근자에 특정의 밀수범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하여 관세행정의 실효를 높이고 있다.

關稅刑法에는 일반법으로서 관세법과 특별법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관세법에 대한 처벌조항(동법 제6조)과 한미행정협정(Status of Force Agreement ; SOFA)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조항(동법 제8조 제④항), 輸出入自由地域設置法, 기타 관계법규로서는 對外貿易法과 外國換管理法 등이 있다.

이처럼 관세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로는 관세법과 관련 특별법규가 있다.

관세법상의 關稅刑法에 관한 규정은 벌칙(제8장)과 調查와 處分(제9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벌칙은 다시 總則에 해당하는 규정(關稅法 제194조 내지 제198조)과 各則에 해당하는 규정(관세법 제179조-제192조의 2)이 있다. 이 벌칙은 특별한 규정(관세법 제194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刑法總則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9장의 조사와 처분은 관세법의 조사방법과 처벌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처벌절차도 관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刑事訴訟法의 適用을 받는다(관세법 제235조).

IV. 關稅刑法과 刑法總論의 體系

1. 刑法總論의 適用原則

刑法 第8條는 “本法 總則은 他法令에 정한 罪에 適用한다. 단, 그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刑法은 관세형벌을 과함에 있어서도 關稅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것을 제외하고는 刑法總論의 규정과 이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형벌도 국가형벌권의 작용에 속한 것으로 刑法의 保障的 機能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다.

다만 關稅刑法은 刑法規定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거나(關稅法 第194條에 형법 규정의 배제를 규정한 것과 제182조 ②항의 미수범), 형법에 없는 兩罰規定을 두고 있고(關稅法 第195조), 法人을 處罰(關稅法 第196조)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關稅犯은 行政犯으로서 국가재정수입확보와 통관질서유지를 위한 行政的 合目的性이 강조되는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關稅刑法은 일반 刑事犯과는 다른 여러 가지의 특례를 두고 있다. 예컨대 關稅法 第194조에 의거 형법총칙규정이 배제되는 경우와 제182조 제②항의 미수범의 정범에 준한 처벌 등을 보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關稅犯의 처벌을 일반 형사범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형법총론에 의한 형의 면제나 감경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關稅犯의 처벌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미수범 및 공범 등 형법총론의 적용을 받는다. 형법총칙은 각종 범죄의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이다. 이에 대한 상세는 형법에 맡기기로 한다.

2. 刑法總論의 排除와 特則

(1) 刑法總論의 排除

가. 教唆犯과 從犯의 處罰

關稅法 第182條 第1項은 “그 情을 알고 第179條 및 第180條의 規定에 의한 行위를 教唆하거나 傍助한 자는 正犯에 準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關稅法 第182條 第1項은 教唆犯에 관한 처벌규정은 刑法上 教唆犯 처벌규정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從犯의 처벌에 관하여는 刑法總則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여기서 “正犯에 準하여 처벌한다”함은 正犯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감경 등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²⁰⁾

나. 豫備犯과 未遂犯의 處罰

關稅法 제182조 제2항은 “제179조 및 제18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豫備를 한 자와 未遂犯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刑法 제25조와 제29조는 “未遂犯을 처벌할 죄는 각 본죄에서 정한다”고 하면서 “未遂犯의 형은 既遂犯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刑法 제28조는 “범죄의 陰謀 또는 豫備行爲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關稅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은 刑法總則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關稅法 제179조 및 제180조에 해당하는 禁止輸出入罪, 關稅違脫罪, 無申告輸出入罪, 不正輸出入罪 등에 대한 미수범과 예비행위를 한 자는 關稅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다. 過失犯 處罰規定

刑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關稅法은 제193조에 “過失로 제189조 내지 제192조의 죄를 범한 자도 벌한다”고 규정하여 關稅犯 중 죄질이 경미한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과실범을 처벌하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關稅法은 제193조를 삭제하고 제188조 제2항과 제3항의 경미한 위반사범에 대한 過失犯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故意犯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이는 비록 죄질은 경미하더라도 그 처벌을 통하여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의 적정을 기하고 이로써 관세행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죄질이 경미함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라. 其他(關稅法 제194조)

關稅法 제194조는 關稅犯에 대하여 형법규정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되 징역형에 처할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關稅犯을 벌금형에 처할 때에는 형법규정 일부의 적용이 배제된다.

1) 刑事未成年者에 대한 處罰

刑法 제9조에 의하여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상 책임무능력자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으나, 關稅犯에 대하여는 만 14세 미만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2) 心神微弱者에 대한 處罰

刑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범을 벌금으로 처벌할 때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3) 聾啞者에 대한 處罰

刑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關稅犯을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에는 농아자라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4) 競合犯의 刑量合算

刑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범을 벌금형에 처할 때에는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다액의

20) 大判 1976. 11. 23, 75 도 363

2분의 1이상이라도 처벌할 수 있으며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여 처벌할 수도 있다.

5) 刑의 酌量減輕

刑法 제53조는 형을 量定함에 있어 “범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酌量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을 벌금형에 처할 때에는 범죄의 정상을 참작한 酌量減輕은 인정되지 않는다.

6) 法律의 錯誤 不認定

刑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關稅犯을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에는 그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한다. 그러나 징역형에 처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兩罰規定, 法人의 處罰 및 懲役刑과 罰金刑의 並科

가. 兩罰規定(關稅法 제195조)²¹⁾

關稅法 제195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의 使用人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使用人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關稅法 제197조 제1항).

본인²²⁾이 고의범일 경우에는 關稅法 제195조의 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처벌된다고 할 것이고, 본인

이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關稅法 제195조는 업무상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法人의 處罰(關稅法 제196조)

關稅法 제196조는 “법인의 임원·직원·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의 처벌은 자유형을 과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과하게 된다. 다만,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직원·사용인에 대하여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판례는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알려지도 않은 채 위반행위를 혼자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關稅法 제197조에 규정한 법인의 免責事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²³⁾.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법인의 형사책임의 성질 내지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있을 뿐이다²⁴⁾.

다. 懲役과 罰金刑의 併科

關稅法 제187조는 “제179조, 제180조, 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징역과 벌금을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는 관세법 중 密輸犯 등 중한 범죄에 대하여는 자유형과 재산형을 병과함으로써 관세범이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

21) 각종의 행정형법에서는 행위자 이외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대부분 양벌규정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22) 여기서 本人이라 함은 관세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업무주체인 自然人을 말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特許保稅區域의 設營人 ②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③ 관세사 ④ 개항장내 용달업자

23) 大判 1980. 3. 11, 80 도 138

24)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부정설·긍정설을 막론하고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양벌규정을 승인하는 이론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배중대, 형법총론(제5판), 홍문사, 1999, 173쪽).

여 처벌의 실효를 거둬들여 물론 關稅犯罪을 단념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3) 沒收와 追徵

刑法 제49조는 몰수에 대하여 “沒收는 他刑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몰수의 부가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刑法 제48조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및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편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追徵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상 몰수와 추징은 범인 또는 범죄 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로부터 범칙물품의 몰수 또는 불법영득만을 목적으로 하고 임의적인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형법상의 그것과 달리 범죄공용물품의 毀棄 혹은 징벌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관세법은 關稅犯罪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하여 필요적 몰수규정을 두는 등²⁵⁾ 刑法의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관세법상의 몰수와 추징이 이와 같이 형법상의 몰수와 추징과 성질을 달리하더라도 독립한 주형이 아니라 부가형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3. 關稅犯과 限時法의 適用

刑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行爲時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行爲時主義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은 그 예외를 인정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舊法보다 경한 때에는 新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刑罰不遑及의 原則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형사소송법은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免訴判決을 하도록 하고 있다²⁶⁾.

그런데 관세법규는 유동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국가, 사회의 경제적 사정이나 국제통관질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많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법규가 수시로 제정 또는 개정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유동적인 관세법의 규정이 그 기간의 경과나 사정의 변경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을 경우, 그 유효기간 중의 범죄행위는 刑法 제1조 제2항의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가벼운 신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 사이에 심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關稅法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追及效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²⁷⁾.

그런데 關稅法規에 追及效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학설은 다수설이 刑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법(재판시법)주의의 원칙에 따라 경한 신법을 적용하고, 경제사정의 변화에 의한 한시법이나 법률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追及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25) 대법원은 關稅法 제198조 제2항에 정한 몰수는 형법총칙의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필요적 몰수에 관한 규정이라고 판시하고 있다(大判 1976. 6. 22, 73 도 2625 전원합의체).

26) 刑事訴訟法 제326조 제4호.

27) 종종 刑이 종전보다 가벼운 刑罰法規로 개정하면서 그 부칙이 개정 전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刑法 제1조 제2항의 “범죄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가벼운 신법의 적용을 한다는 신법우선주의의 적용을 입법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追及效의 인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학설의 입장을 벗어날 수 있다.

비하여 판례는 신법의 동기가 법률상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적 사정의 변화일 경우에는 追及效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²⁸⁾.

예컨대 대법원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처 고시의 변경이,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통관업무부담의 경감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하고 있다. 또한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을 얻어내어 범죄 후 형의 폐지나 변경에 대하여 사후에 그 수입승인조건에 변경이 있다 하여 범죄 후 형의 폐지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오히려 경제적 여건의 변화나 새로운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질서와 국내외의 통관질서에도 어긋나는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에 귀착된다. 더욱이 罪刑法定主義라는 刑法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예컨대 1999년 1월경에 關稅法의 규정상 수입다변화품목이었던 골프채를 일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입하였다. 이후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關稅法規의 변경에 의해 1999년 7월 1일부터 골프채가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관세법규의 변경시에 追及效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골프채의 부정수입행위는 1999년 1월의 처벌법규에 불구하고, 신법인 1999년 7월 1일의 변경법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V. 特別法과 關稅刑法

1.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의한 關稅刑罰

1960년대를 들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密輸行爲가 날로 성행해지면서 그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지능화되었으며, 폭력을 수반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과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고질적인 사회악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의 하나로 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關稅法違反行爲의 가중처벌조항을 설정하여 죄질이 중한 특정 關稅犯에 대하여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해 왔다.

그후 최근 국가경제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사회가치관 및 국민 법감정의 변천에 따라 동법 제6조를 개정하여 집단범이거나 상습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규정을 삭제하고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포탈금액을 크게 상향 조정하였다.

특가법 제6조에는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세법상의 처벌에 우선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禁止品 輸出入罪(관세법 제 179조 ①항)의 가중처벌²⁹⁾

①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물품가격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위 ①과 ②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③ 본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와 본범죄의 예비범이나 미수범 등도 그 정범 또는 본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2) 關稅通脫罪(관세법 제180조 ①항)의 가중처벌³⁰⁾

28) 종래의 판례와 실무가들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합목적성을 중요시하여 대체로 추급효를 인정하는 입장을 따르고 있다.

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동조 제6항 제1호.

30) 위의 법률 제6조 제4항, 동조 제6항 제4호.

- ① 포탈한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포탈한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위 ①과 ②의 경우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③ 본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와 본범죄의 예비범이나 미수범 등도 그 정범 또는 본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3) 無申告輸出入罪(관세법 제 179조 ②,③항)의 가중처벌³¹⁾
- ①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위 ①과 ②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③ 본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와 본범죄의 예비범이나 미수범도 그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4) 集團의 또는 常習的 特定關稅犯의 加重處罰³²⁾
 집단적, 상습적으로 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무신고수출입죄, 관세장물취득죄 등을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물품가액이나 포탈세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범죄단체조직에 의한 밀수와 상습적 밀수에 대하여 중벌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관세법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고발을 요하지 않도록 관세법 제200조 ①항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특가법 제16조). 즉 세관장의 고발 없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벌금형은 자유형에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세관에서 조사한 특가법 해당 관세법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통고처분만으로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반드시 사법기관의 재판을 통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2. 韓美行政協定臨時特例法(SOFA)과 關稅刑罰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에 의거 미군 주둔의 합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그들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뒤늦게 1966년 7월 9일에야 체결되어 1967년 2월 9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그 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서 이를 통상 ‘주둔군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 ‘SOFA’라고 약칭하고 있다.

동 협정 제9조(통관과 과세), 제13조(비세출금기관), 제15조(초청계약자), 제20조(군사우체국)등에서 관세에 관한 면세, 과세, 통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제9조 제1항에서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관세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6항에서는 한미당국 상호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세물품을 비면세권자에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동 협정의 실시를 위한 關稅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關稅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SOFA대상자가 SOFA에 의한 면세물품을 無斷讓渡할 경우 처벌되도록 하고 양수자로부터는 관세를 징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 SOFA대상자의 密輸行爲 등 관세에 관한 범죄는 전술한 ‘한미행정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미행정협정의 실시에 따른 關稅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동법에 특례

31) 위의 법률 제6조 제2항, 동조 제6항 제2호.

32) 위의 법률 제6조 제8항.

규정이 없는 경우에 關稅法이 적용되는 것이다.

SOFA 임시특례법 제8조 ④항에는 SOFA에 의한 면세대상자(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에 면세대상자로 규정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동협정 15조에 의한 초청계약자를 말함) 또는 면세대상자였던 자가 SOFA규정에 의거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보고 관세법 제179조 ②항(무신고수입죄) 및 동법 제182조 ②항(예비범과 미수범의 처벌)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면세대상자가 면세받은 물품을 무단양도한 때에는 무신고수입죄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관세포탈죄로 처벌하거나 면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은 없다. 이때 비면세대상자의 양수는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SOFA임시특례법 제9조 제①항) 추징은 양수자로부터 하게 되고 무단양수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179조 및 180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포탈죄 또는 무신고수입죄 등으로 양수자를 처벌할 수 있다.

3. 其他 關係法律

1) 對外貿易法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는 嗣位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통산산업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통산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고 나아가 關稅長에게 수입신고까지 한 경우에는 關稅法상의 무신고수입죄 외에 대외무역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양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그 외에도 대외무역법에서는 미회수대금의 처리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물품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한 자, 원산지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한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 또는 판매업자,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을 수입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 外國換管理法

외국환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허가 없이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을 수출입한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판례는 “금화를 수입한 행위는 關稅法이 아니라 특별인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關稅法 제137조, 181조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³³⁾하고 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그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금화를 密輸入하려고 하다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경우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擬律할 것인데 세관검사장으로부터 引取하지 아니하였으므로 密輸入行爲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³⁴⁾. 다만, 대법원은 “금괴의 수입에 따른 관세포탈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關稅法 제180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금의 密輸入에 관한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할 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³⁵⁾.

3) 輸出自由地域設置法上 關稅刑罰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6조는 “이 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물품을 자유지역 밖(관세지역)으로 반입한 자는 관세법 및 특가법에 의해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3) 大判 1991. 3. 22, 90 도 1492..

34) 서울高法 1990. 4. 27, 89 노 3887. 그러나 1991. 12. 27 법개정으로 외국환관리법에 미수범처벌규정 신설하였다.

35) 大判 1985. 6. 11, 85 도 849.

VI. 關稅刑罰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1. 改正前 關稅罰則의 問題點

1) 罰則條項 體系上的 問題點

시대적 필요에 따라 벌칙조항이 부분적으로 손질되면서 현행 관세벌칙조항 체계는 죄질이나 보호법익에 있어서 모순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예로 수입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접밀수범은 수입신고를 한 부정수출입범보다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나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있지 않았다. 특히 수입신고한 관세포탈범이 수입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수입범보다 징역형에서는 중하게 처벌되는 반면 벌금형에서는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은 (관세포탈죄의 경우) 동법 제180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에 무신고수출입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181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경우 수입 신고한 관세포탈범이 수입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무신고수입범보다 징역형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문제점이 있었던 반면, 벌금형에서는 평균관세율이 7 내지 8%인 점을 고려할 때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와 징역형으로 처벌할 때에 그 결과를 달리하게 되어 일관성 없는 형벌체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관세범죄물품을 취득, 양여, 보관, 알선하는 장물죄는 사후행위로서 본죄보다는 원칙적으로 경하게 처벌되도록 함이 상당하나, 부정수출입죄의 경우에는 본범보다 장물죄가 오히려 중하게 처벌되도록 되어 있었다. 즉 개정전 관세법 제 181조의 2가 부정수출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제 186조는 관세장물죄에 대하여는 금지품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무신고수출입죄 등과 함께 부정수출입죄의 장물범을 일괄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규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 法定刑量上的 問題點

1996년 12월 30일 개정전 관세법은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 개정된 벌칙조항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처벌형량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어 있었다. 그 예로 관세포탈죄의 경우 법인과 행위자를 모두 처벌하고 범죄물품에 대하여는 몰수, 추징함으로써 최고 평균 포탈세액의 40배까지 처벌하고 있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관세포탈죄로 처벌되는 경우 도산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여 오히려 국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³⁶⁾.

또한 유사한 성격의 내국세 조세범처벌과 비교하더라도 형량이 지나치게 과중하였다. 즉, 관세포탈죄는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이하 벌금인데 반하여 내국세포탈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었다. 관세범의 범죄물품은 전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국내도매시가로 추정하나 내국세범의 범죄물품은 일부만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달리 별도의 추정규정이 없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관세는 포탈세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해당되나 내국세는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해당되고, 형량과 관련하여서는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세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반면, 내국세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관세벌칙 형량과 비교하더라도 우리 나라 관세벌칙 형량이 지나치게 과중한 면이 있다. 일본의 경우, 금지품수출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

36) 관세포탈죄의 최고 처벌내역 : 대표자 벌금(포탈액의 10배) + 법인벌금(포탈액의 10배) + 몰수추징액(범죄물품의 국내도매시가).

고 범죄물품은 몰수 또는 추징하며, 관세포탈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엔 또는 포탈세액 10배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물품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禁止品輸出入罪는 5(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물품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 밀수에 의한 關稅逃脫罪도 위와 같으나 기타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불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국내판매가격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도록 하면서 벌금 미납시에 범죄물품을 몰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不正輸出入罪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형을 더욱 경감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 관세법은 그 형이 이들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더욱이 기존의 관세벌칙조항의 형량은 무역자유화, 세계화 추세와도 괴리되어 있다. WTO체제하의 수입자유화시대(현재 우리 나라의 자유화율 99.3%)에는 금지품수출입죄, 무신고수출입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다. 그리고 관세율(현재 우리 나라의 평균관세율 7.9%)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관세포탈죄에 대한 처벌의 의미가 과거와는 달라지게 되었으며 관세법치사건의 발생여지도 크게 축소되었다.

2. 關稅犯의 加重處罰法 適用에 대한 問題點

1) 競合犯과 加重處罰法 適用與否

동일회사의 동일한 무역담당자가 관세포탈(일부 또는 전부)행위를 수차 반복하여 자행하였을때이다. 이 경우 수 개의 범죄가 독립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포탈한 행위가 각 독립 범죄이고 구체적 경합범³⁷⁾이 된다. 이때 포탈세액을 전부 합산하고 이로 인하여 특가법에 적용하려는 것을 실무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히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연속한 수 개의 독립된 포탈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법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구성요건인 포탈세액이 각 범죄 행위별로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개의 범의로서 분해통관에 의한 각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하여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세액이 될 때에 비로소 특가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2) 加重處罰法 適用과 想像的 競合犯

상상적 경합범(Idealkonkurrenz)이라고 함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형법 제40조). 이는 관념적 경합범이라고도 하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이나 과형상 일죄로 취급되는 것이다.

관세법에 있어 무면허 수입행위에 있어서 객체인 밀수품이 유제품인 경우에는 관세 포탈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금지품 수입죄에 있어서도 물품을 밀수입하였다면 무면허 수입죄·관세 포탈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상상적 경합범으로 되어 중죄인 금지품 수입죄만이 적용되어 처벌되는 것이다.

3) 其他 問題點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만불까지 외화의 소지가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여행자가 소비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하여 반입하면서 관세법 규정을 잘 몰라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경우 정상 고려 없이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이를 엄격히 시행하는 경우 외환 소지한도 금액을 해외에서 소비토록 조장하게 되므로 국민경제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그리고 무역자유화로 인한 물동량 및 입출국 여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현시점에서 관세법 위반 사실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하는 현재의

37) 구체적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37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실제적 경합범이라고도 하며 구형법에는 병합죄라고 하였다. 이는 수개의 행위의 누적일 뿐 일개의 행위로 인한 형벌 가중인 특가법의 적용대상과는 다르다.

관세법 처벌제도는 연간 3,000여명이라는 무의미한 전과자만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 關稅罰則制度 改正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4호로 관세벌칙조항은 구관세법상의 벌칙조항체계상 법정형량에서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체제로 정비되었다.

현행 벌칙조항 체계는 과거와는 달리 관세범죄물품에 대한 신고여부에 따라 밀수출입죄, 무신고수출입죄를 통괄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신고를 전제로 하는 부정수출입죄 등은 경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관세범죄물품의 장물죄는 본죄와 비교하여 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한편, 절차법규 위반죄는 고의, 과실의 경우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었다.

또한 벌칙조항의 형량을 내국세의 입법례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정하였으며, 수출과 수입의 경우를 나누어 형량을 달리하여 규정하였다.

4. 改善方向

1) 營業主의 兩罰規定 適用

영업주의 양벌규정에, 양벌대상인 영업주 본인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점포에서 점원이 주인의 지시없이 밀수품을 취급하였다 고 하면 영업주 본인의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래품상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면서도 주인이 처벌을 면하므로, 영리를 목적하는 영업주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 관한 한 종업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도 제재를 과할 수 있도록 개정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罰金 및 自由刑 規定의 改正

벌금의 벌칙규정은 더욱 높익 자유형은 삭제하거

나 축소함으로써 범인이 한번이라도 밀수를 하거나 밀수품 거래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부정하게 얻은 이익보다도 재산상의 손해가 엄청난 고액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예방적 견지에서 좋다고 본다.

3) 過失犯 處罰의 緩和

형법은 과실범, 즉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으로 벌하지 아니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할 수 있다(형법 제13조).

행정질서벌에 있어서도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국가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과실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서벌은 그 행위가 반사회적, 반윤리적이기 때문에 벌하는 것도 아니며, 행정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기 때문에 벌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행정질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서 장차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정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권익에 대한 위태화를 보호하려는 뜻에서 벌하는 것이다.³⁸⁾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질서과실범의 획일적 엄격한 처벌은 보호법익의 형량이나 위태화의 정도를 고려하여 불과태로 처분에 의하거나,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실범의 엄한 획일적 처벌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통상무역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형벌의 효력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하여튼 현행 관세 질서과실범은 과정의 고려없이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게 되면 모두 벌하고 있다.

4) 密輸 賞與金制度의 復活

밀수검거에 따른 상여금제도의 부활이 요망된다. 범죄신고인에게 주어지던 상여금이 매우 감소하여 범죄신고가 현저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또 대형밀수에 대한 신고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대형밀수의 검거율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타수사기관의 검거율도 종전보다 저조하므로, 상여금제도의

38) 金東洙, 稅官行政解說, 韓國海技士協會, 1977, 275쪽 참조.

부활이 요망된다.

5. 小 結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발전과 고도성장이라는 고무적인 명제 앞에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밀수는 근절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關稅犯에 대한 벌칙제도의 운영을 보다 합리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민경제의 발전과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밀수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 명제이고 보면 어떻게 하여야 근절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노력과 연구를 계속하여야 되겠고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개선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는 것이 그 첩경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밀수의 근본적 환경의 제거이며 국민복지와 국가경제를 보다 높이고, 21세기에 다가올 통상 무역의 자유화 물결에 부응하는 관세정책에 대한 새로운 환경설정이다. 즉 통상무역이나 수출입의 자유는 넓히고, 국민의 위생·건강을 지키며 국가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세법의 개폐와 통관절차의 개정이 요망된다.

WTO와 관세법상의 통상무역정책은 관세형벌의 중요한 정책방향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WTO체제와 자유무역의 기치아래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고, 국가와 지역적 무역 및 관세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은 특히 IMF체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여건 하에서 놓여있다. 더욱이 선진각국에 비하여 부존자원과 고도기술이 부족한 입장에서 가공산업이나 무역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우리의 관세 및 무역정책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는 새로운 통관질서의식의 형성과 관세법의 통관절차 및 그 제도적 장치로서 형벌질서를 재정립하고 확립할 때임이 분명하다.

관세행정과 관세형벌은 상호 보완을 필요로 한다. 관세형벌만으로는 밀수를 근절 할 수 없다. 근자에 특정의 밀수범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관세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 논문은 관세법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와 자료가 일천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그리고 관세법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에는 매우 미흡하다. 다만 현행관세형벌의 체계와 특성을 국가형벌권의 차원에서 포섭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구촌 한가죽시대에 대응하는 관세형벌의 동향을 가름하고 문제의식과 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후속논의를 촉진하고자 한다. 후속논의로써 관세범죄의 유형과 제재절차에 관한 연구는 다음 호에 게재하고자 한다.